

# **주주회원 자격 심사 등에 관한 규정**



**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**

# 주주회원 자격심사 등에 관한 규정

## 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(이하 “우리 회사”라 칭한다) 정관규정에 따른 우리 회사 주주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가입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주주회원의 정의)

주주회원이라 함은 우리 회사 정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주주총회(또는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이사회)의 의결에 의하여 주주회원이 될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주주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.

## 제 3 조 (주주회원의 자격)

① 누구나 우리 회사의 주주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.

단,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, 우리 회사의 주주회원 자격을 제명에 의하여 박탈당한 사람은 향후 5년간 우리 회사의 주주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(또는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이사회)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우리 회사의 주주 될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.

## 제 4 조 (주주회원의 권리의무)

① 주주회원은 우리 회사의 골프장 시설물을 골프장 이용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회원이 성별, 나이, 직업, 직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주주회원들이 위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주주회원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의 주주임에 대한 자부심과 궁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## 제 5 조(주주회원 승계의 제한 등)

- ① 승계인은 명의개서 접수와 동시 입장료만 회원대우를 받고, 정식 명의개서는 이사회의 승인 후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한다.  
(명의개서 접수 시 주지시킨다)
- ② 회사는 주주회원이 정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주식의 양도에 따른 명의 개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승계인(양수인)의 성명, 주소, 나이, 직업 등을 회사 게시판에 1주간 공고 하여야 한다.
- ③ 모든 주주회원은 이사회에 대하여 게시기간 1주일내에 주주회원의 승계인의 승계에 대한 찬, 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다. 이사회는 승계에 대하여 주주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반대진술이 있거나, 5인 미만일지라도 반대진술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한 후 승계에 대하여 許, 否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위 許, 否결정에 따라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회원의 승계인 또는 주주회원 신규자격 취득예정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주회원 자격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, 조사결과 승계인 등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회원 자격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,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하여 많은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로 판명되는 자에 대하여는 주주회원의 승계 또는 신규자격 취득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이사회는 주주회원 자격 승계에 대한 許, 否를 이사회 회의에서 결

의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사회로부터 통지받은 즉시 신청서 반려, 주주명부의 변경, 명의개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단, 행정의 신속화로 입회 회원 권리의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.)

- ⑥ 이사회로부터 주주회원 자격 승계에 대한 불허의 결정이 없는 한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(주주회원 자격변경)의 기준 일자는 ①항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신청서가 접수되고 1주일간 공고 후 이의가 없을 시 주주명부의 변경 및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⑦ 결의서 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결의를 받았다가 차후 밝혀졌을 때는 재결의 할 수 있다.

## 제 6 조 (여성회원 입회 제한 등)

- ① 여성 주주회원의 주식 및 회원권 양수는 기존 여성 주주회원의 탈퇴와 동시 여성 주주회원으로부터 주식 및 회원권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.
- ② 기존 남성 주주회원이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권자가 여성일 경우 해당여성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식 및 회원권 양수는 허용한다. (단, 여성에게 양도불가)
- ③ 여성 주주회원이 탈퇴시 탈퇴한 여성 주주회원으로부터 남성이 주식 및 회원권을 양수하는 것은 허용한다.
- ④ 법인 주주회원의 사용자를 여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, 여성이 여성 회원권을 구입하여 법인회원권의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만 허용한다. (단, 이사회 결의일인 2016년 2월 12일 이전 등록자는 인정한다.) 또한, 여성이 법인회원으로 등록 후 매3년마다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해당 법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실적 증명원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(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
법인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)

⑤ 법인 주주회원이 여성에게 주식 및 회원권을 양도할 경우는 불허한다.

⑥ 남성 주주회원이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불허한다.

## 제 7 조 (주주회원의 이용권 제한 등)

① 주주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는 일정기간 골프장 이용 권리를 정지하거나 자격박탈(제명)을 의결할 수 있다.

1.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
2. 회사의 규칙을 위배하여 골프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
3. 정관 제11조에 규정된 주금 또는 출자금을 회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

② 골프장 이용 권리에 대한 제한은 1년 이하로 한다.

③ 이사회가 기존 주주회원에 대하여 골프장 이용 권리의 제한 또는 자격 박탈을 의결할 때에는 대상 주주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 제 8 조(의결 정족수)

본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## 부 칙

## 제 1 조

주주회원은 본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하고 1주일간 공고 후 이의가 없는 시점부터 우리 회사

골프장 시설 이용 권리는 제한 받지 아니한다.

## 제 2 조(개정 및 해석)

본 규정의 개정 및 해석은 이사회에서 한다.

### 부 칙

## 제 1 조(시 행 일)

본 규정은 2002. 7. 1.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## 제 1 조(시 행 일)

본 규정은 2009. 4. 24.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## 제 1 조(시 행 일)

본 규정은 2009. 11. 19.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## 제 1 조(시 행 일)

본 규정은 2011. 4. 12.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## 제 1 조(시 행 일)

본 규정은 2016. 2. 12.부터 시행한다.